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 7. 21 선고 2020가단2212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권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홍

변 론 종 결 2021. 6. 16.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20. 7. 24.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0. 7. 28. 접수 제191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2. 피고의 남편인 C로부터 충남 보령시 D 외 2필지 상의

태양광발전시설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99kw급 5기의 시설공사를 수급하였다. 그런데 위 C은 위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공사대금 중 6,5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 후 위 C은 2020. 7. 28.경 피고에게 2020. 7. 24.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20. 7. 28. 접수 제1917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위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C과 피고 사이의 위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하던 중 이혼하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재산분할로서 취득한 것이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나 혼인기간 등에 비추어 위 재산분할이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판단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임에 비추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1997. 6. 2.경 C와 혼인한 뒤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둔 점, ② 그 후 C이 E과 불륜을 저지르는 등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C과 피고의 사이가 악화되었던 점, ③ 원고는 피고와 C이 실제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가장이혼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접수한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소장을 접수한 2020. 8. 6.보다 하루 전인 2020. 8. 5.이었던 점, ④ 피고는 2020. 9. 23.경 위 C와의 협의이혼을 신고하였던 점, ⑤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E이 실제로 피고의 남편인 C과 불륜을 저질렀고, 원래 피고와 C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오히려 피고가 C과 실제로 이혼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원고로서는 현재 피고와 C이 허위로 가장이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약 6,400만 원 남짓인데, 위 증여 이전에 이미 F조합에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점, ⑦ 피고와 C의 혼인기간이 약 23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20. 9. 23.경 실제로 C과 이혼한 것으로 보이고, 위 C은 2020. 7. 24.경 위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재산분할로서의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와 C의 혼인기간이 약 23년에 이르는 점,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약 6,400만 원 정도인데, F조합에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여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부 동 산 의 표 시

1. 충남 보령시
전 1339㎡

2. 충남 보령시
답 1327㎡

- 끝 -

